

## 경운대학교 졸업종합시험시행세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세칙은 학칙 제35조에 의하여 졸업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교과과정의 성질상 논문 제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부(과)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졸업종합시험으로 졸업논문 제출을 갈음하는 시험제도(실험실습보고 및 실기발표 실시에 따른 제반사항은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에 준한다)이다.

**제3조(응시자격)** 시험실시 직전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이 졸업학점에서 학기 기준 최대 수강 신청 학점을 제한 학점이상 취득한 자로 최종 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한다.

**제4조(시험실시 및 절차)** ① 학부(과)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학부(과)별 졸업 종합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 시험 교과목 편성은 학부(과) 특성에 따라 5개 과목 이내로 졸업종합시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③ 시험시행 시기는 매학년도 학사일정에 따른다.

④ 각 학부(과)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5조(학부(과)별 시험관리)** ① 졸업종합시험의 학부(과)별 시험 관리는 학부(과)단위 졸업시험 관리위원이 담당한다.

② 졸업시험 관리위원의 시험 관리에 대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시험계획수립 및 시행
2. 시험교과목 출제의 범위와 방법 및 채점 기준
3. 합격자 사정
4. 시험에 관한 기타 사항

**제6조(불합격자의 구제)** 불합격자는 다음시험에 재 응시할 수 있으며, 과락으로 인한 불합격자는 당해 과목만을 재 응시할 수도 있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